

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

개정 : 2019. 9. 1.

구. 지침(2019-2학기 이전 입학생)	신. 지침(2019-2학기 이후 입학생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</p> <p>제30조(수업연한)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제31조(이수 학점) ① 박사학위과정수료의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신청 가능한 최대학점은 9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,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 박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타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은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타 대학원의 강의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.</p> <p>제33조(세부전공분야의 이수요건)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제3조의 6개 전공영역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34조(법학사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)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법학석사 학위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‘16학점’을 ‘8학점’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</p> <p>제30조(수업연한)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</p> <p>제31조(이수 학점) ① 박사학위과정수료의 최소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기당 신청 가능한 최대학점은 9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이 A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,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</p> <p>제32조(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 박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타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은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타 대학원의 강의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.</p> <p>제33조(세부전공분야의 이수요건)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제3조의 6개 전공영역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34조(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)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 자격이 없는 자는 12학점을 추가이수하여야 하며, 특수대학원 졸업생이 본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경우, 동일계의 경우는 6학점 이상, 비동일계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 ② 추가이수학점은 운영위원회 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정하는 본교 석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

구. 지침(2019-2학기 이전 입학생)	신. 지침(2019-2학기 이후 입학생)
<p>제35조(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)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</p> <p>제36조(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) ① 논문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35조(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) ① 논문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